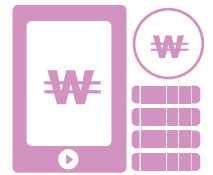


5 설치 비용에 대한 지원은 무엇인가요?

- 휴게시설, 세면·목욕시설, 세탁 및 탈의시설 등 위생시설 설치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공단에서 『**산업재해예방시설 용자지원**』을 해드립니다.
- 산업재해예방시설 용자지원 제도 안내
 - 지원 대상 :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, 민간기관
 - 지원 한도 : 3억 원 이내
 - 용자 조건 : 연리 3%, 상환기간 3년 거치 7년 이내 상환



6 관련 주요 질의·회신

Q 휴게시설이나 수면장소의 크기(면적)는 얼마가 적절한가요?

A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크기(면적)는 없으나 대상 근로자가 편히 앉아 쉬거나 수면을 취할 수 있는 크기를 권장합니다.

Q 목욕시설에 대한 상세한 기준은 무엇인가요?

A 목욕시설은 벽이나 칸막이로 가려져 있어야 하며 대상 근로자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크기로 동절기에는 온수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.

Q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기관도 위생시설 등의 설치 의무가 있나요?

A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공공기관도 고용하는 근로자에게 휴게시설 및 위생시설(세척·목욕·세탁·건조)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.

Q 유해 작업을 도급 주는 경우에 도급인의 책임은 무엇인가요?

A 수급인이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장소 제공 또는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.



+ 사업주는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하여 휴게·세면·목욕·세탁·탈의·수면시설 등 위생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.

7 지역별 문의처
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및 지도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기관명	전화번호	주 소
서울지역본부	(02) 828-1670~4	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179 유한양행빌딩 14, 15층 (대방동 49-6)
서울북부지도원	(02) 3783-8341~4	서울시 중구 칠패길 5 우리빌딩 7, 8층 (보래동 1가 10)
강원지도원	(033) 815-1010~3	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70 대한교원공제회관 2층 (온의동 513)
강릉출장소	(033) 655-1861~3	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내 15층 (홍제동 1001)
부산지역본부	(051) 520-0581~7	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1763번길 26 (부곡동 64-31)
경남동부지도원	(055) 371-7531~5	경남 양산시 동면 남양산2길 51 양산노동종합청사 4층 (석산리 1440-1)
울산지도원	(052) 226-0542~4	울산시 남구 톨빌로 146 국민은행빌딩 (달동 615-8)
경남지도원	(055) 269-0541~4	경남 창원시 중앙로 159 (용호동 7-3)
대구지역본부	(053) 609-0541~4	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로 648 호수빌딩 19, 20층(동인동2가 50-3)
경북동부지도원	(054) 271-2041~4	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402 (대도동 124-4)
경북북부지도원	(054) 478-8021~3	경북 구미시 3공단 1로 312-23 (임수동)
경인지역본부	(032) 570-7260~5	인천시 서구 한빛로 15 (가정동 491)
부천지도원	(032) 680-6540~2	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69번길19 대신프라자3층 (상동 538-3)
경기남부지도원	(031) 259-7131~7	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(이의동 906-5)
경기동부지도원	(031) 785-3321~3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쇄골로 17번길3 소곡회관 4층 (금곡동 106-2)
경기북부지도원	(031) 828-1930~4	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경기북부상공회의소 1층 (신곡동 801-1)
경기서부지도원	(031) 481-7510~8	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230 센트럴시티웨딩홀 2층 (교전동 729-2)
광주지역본부	(062) 949-8730~4	광주시 광산구 무전대로 282 무역회관 8, 9층 (우산동 1589-1)
전북지도원	(063) 240-8520~4	전주시 덕진구 간산로 251 고용노동부종합청사 4층(인후동 1가 807-8)
전남동부지도원	(061) 689-4930~3	전남 여수시 무선 중앙로 35 (선원동 1285)
제주지도원	(064) 797-7504	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상로 473 중소기업지원센터 4층 (이도2동 390)
대전지역본부	(042) 620-5630~3	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 339번길 60 (문지동 104-7)
충북지도원	(043) 230-7141~4	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161번길 20 KT3층 (가경동 1171)
충남지도원	(041) 570-3431~2	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(불당동 492-3)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3층
본부 직업건강실	(032)510-0723~4	인천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(구산동 34-4)

CODE

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
휴게·세면·목욕 시설 등
위생시설을
꼭 설치하여야
합니다



산업재해예방
안전보건공단

+ 사업주는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하여 휴게·세면·목욕·세탁·탈의·수면시설 등 위생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.

※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(보건조치)

● 근로자들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

●●●▶ 휴게시설

● 근로자가 환경미화(거리 청소 등), 음식물 쓰레기 등 오물 처리, 폐기물 수거·선별 등의 업무 등 미생물로 인하여 신체 또는 피부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

●●●▶ 세면·목욕·탈의·세탁시설
(2012. 9. 6.부터 시행)

● 야간에 작업하는 근로자가 수면을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

●●●▶ 수면장소(시설)

● 근로자가 유해 화학물질, 방사성물질, 고열, 분진 등 건강상의 유해인자 노출업무에 종사하는 경우

●●●▶ 세면·목욕·세탁·탈의시설 등 위생시설

+ 도급 사업주의 의무

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이 휴게·세면·목욕·세탁·탈의·수면 시설 등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.

※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8항(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)

1 누가 설치해야 하나요?

●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위생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. ※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관계 없습니다.

2 왜 설치해야 하나요?

- **휴게시설** :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스트레스는 건강장애 및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과 공간이 필요합니다.
- **위생시설** : 근로자의 신체나 작업복에 묻은 유해물질을 작업장에서 세척 또는 세탁하지 않을 경우 이동과정을 통해 근로자 본인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과 가족들도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.
 ※ 특히, 환경미화, 쓰레기 선별·수거·처리 업무 종사 근로자는 높은 농도의 흡입성 항원(진드기, 곰팡이, 꽃가루 등)을 함유하고 있는 먼지에 노출되어 질병 발생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.

3 어떤 시설을 설치해야 하나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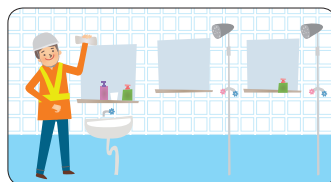
● 주요 대상 설비 (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)

대상 작업 및 조건	관련 조항	대상 시설	내 용
공동	제79조	휴게시설	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
환경미화 업무 등	제79조의2	세면·목욕·탈의 및 세탁시설	근로자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
야간작업	제80조	수면 장소	야간작업 근로자에게 수면을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남녀 각각 구분 설치
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	제448조	세면·목욕·세탁 및 건조시설	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시 설치 및 필요한 용품과 용구 비치
허가대상 유해물질 제조·사용 작업	제464조	탈의실·샤워실 및 작업복 갱신실	허가대상 유해물질 제조·사용 작업시 설치 및 필요한 용품과 용구 비치
석면 해체·제거 작업	제494조		석면해체·제거 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설치 및 필요한 용품과 용구 비치
금지유해물질 제조·사용 작업	제508조	긴급 세척시설 및 세안설비	응급시 근로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
고열·한랭·다습 작업	제570조	탈의·목욕·세탁 및 건조시설	근로자의 작업복이 심하게 젖게 되는 작업장에 설치
방사성물질 취급 작업	제589조	세면·목욕·세탁 및 건조시설	방사성물질 취급작업시 설치 및 필요한 용품과 용구 비치
혈액매개 감염우려 작업	제599조		혈액매개 감염우려가 있는 작업시 설치
분진작업	제615조		분진작업을 하는 경우 설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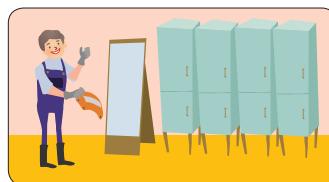
● 주요 대상 설비 (예시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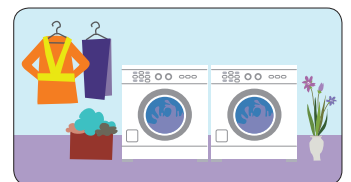
〈휴게시설〉



〈세면·목욕시설〉



〈탈의시설〉



〈세탁시설〉

4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?

-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,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
 - 사업주가 휴게시설·수면장소(시설)·세척·목욕·세탁·건조시설 등 위생시설을 미설치한 경우
 - 사업주가 환경미화 및 쓰레기 수거·처리 업무 등에 대한 세면·목욕·세탁·탈의시설 미설치한 경우

-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 -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가 수급인에게 위생시설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

